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(안)

제 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도민으로서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충청북도도민대상 (이하 "대상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수상대상자) ① 대상수상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 충청북도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추천공고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계속하여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.

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.

제 3조 (대상부문)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술부문
2. 문·예부문
3. 지역발전부문
4. 교육·체육부문
5. 여성부문
6. 청소년부문
7. 농어민부문
8. 산업·근로부문

제 1조 (심사위원회 설치)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
제 5조 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도지사가 제3조 규정에 의한 수상 부문별로 각5인씩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추천된 전문인사중 도지사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자 추천마감일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, 대상 시상 종료후 해촉 된것으로 본다.

③위원회에 위원장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제 6조 (회의및 의사) ①회의는 도지사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
제 7조 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.

②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계장이 된다.

제 8조 (추천및 심사등) ①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.

②수상대상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.군수가 추천하되, 추천방법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9조 (수상자의 결정) 대상수상 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의 결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.

제10조 (시상) ①대상은 매년 11월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.

② 제1항의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.

제11조 (실비변상)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위원회실비
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 행 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충청북도문화상조례(조례 제146호 1963.1.11), 충청북도장한
여성대상조례(조례 제1656호 1968.11.4),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(조례 제
1716호 1989.6.2),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(조례 제1805호
1990.9.21)는 이를 폐지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문화
상,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, 충청북도청소년대상,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
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.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6년 4월 18일

제 안 자 : 김동진의원외 6인

1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도민에게 수여코자 하는 도민대상으로서의 상훈의 신뢰성 확립과 전문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"각4인" → "각5인" (안 제5조제1항조문중 위원수 자구 수정)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도민대상조례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 제1항 조문중 "각4인" 을 "각5인" 으로 한다.